

2023년 연말연초 해외판촉사업(온·오프라인) 공고문

1. 사업목적

- 해외 판촉(시식, 시음 등) 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 수출·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

2. 지원대상

- 한국식품 취급 수입바이어, 유통업체
- 행사기간 : `23. 12월 ~ `24월. 2월

3. 지원품목(한국산)

- 대미수출지원품목 : 음료, 과자류, 면류, 김치, 쌀가공품 등
- * 단일 판촉은 상기 5개 품목 중 1개 품목 선택 신청 하여야 함.
- ** 종합판촉의 경우 상기 1 - 5개 대미수출지원품목 실적이 전체 품목 수입 실적의 50%이상 이 되어야 함.

4. 지원사항

- 지원한도 : 50~200백만원 내외
- 지원항목 :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비용 지원 (임차, 장치, 홍보 및 시식행사비 등)
 - (1) 임차·장치·입점 :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임차 및 설치비용
 - (2) 홍보 : 판촉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, 미디어매체 광고, 현수막, 전단지, 인터넷 배너 제작, SNS홍보, 온라인 시식체험, 증정품·경품행사, 포인트·쿠폰행사, 식품중개인 기획·입점 관련 비용 등
 - * 증정품·경품·포인트·쿠폰 등은 합산하여 배정예산의 25% 한도
 - (3) 시식행사 : 판촉요원 고용비, 시식 식품비(배정예산의 10% 한도) 및 관련 소모품비 등
- 지원비용

구 분	지원비율	사업의무액(목표수입액)
일반품목	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집행 비용의 80% (단, 대기업제품 단독판촉 50%)	바이어(유통업체) 신청예산의 최소 3배 이상을 목표수입액으로 설정·제출 * 단 목표수입액은 판촉 행사전 60일 이내 및 행사기간 내에 수입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
신선농산물, 인삼, 김치, 유자차, 삼계탕	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집행 비용의 90% (단, 대기업제품 단독판촉 50%)	* 3배 이상 : 가공식품(김치류, 인삼류, 라면, 스낵, 음료, 주류, 유제품, 차류, 쌀가공, 소스류 등) 및 유통매장 직접연계 판촉

- * 수입바이어, 유통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, 해당 목표 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같음하여 실제 달성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최종 사업비 정산 예정
- * aT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이 줄어든 비율만큼 목표수입액도 감액됨
- * 대기업 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(C, 롯데, 신세계, 하림, KGC, 동원, 하이트진로, 삼양, 농심 등)

5. 신청안내

- 접수방법 : aT 미주지사 이메일 접수 *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
-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(양식 첨부)
- 접수기한 : **2023.10.19.(목) 17:00시까지** *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

6.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

권역	지사	연락처
미동부·중부, 캐나다	뉴욕지사	newyork@at.or.kr 1-212-889-2561
미서부·중미	LA지사	atcenterla@gmail.com 1-562-809-8810

2023년 온·오프라인 해외판촉사업 지원신청서

◎ 신청업체 정보

주 관 사 (바이어)	직접연계시 직접연계로 기재	담 당 자	
주 소			
연락처	/ @ .	주요 취급품목	

◎ 행사계획

지원구분 (해당사항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)	지원비율 50%	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 대기업 제품 단독 판촉(C, 롯데 신세계 하림 KGC, 동원 하이트진보)		
	지원비율 80%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가공식품 단일 품목 판촉 ex)라면 판촉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가공식품 다품목 종합판촉 ex)라면+유제품 판촉		
	지원비율 90%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선농산물 또는 전략품목(김치·유자차·인삼·삼계탕) 판촉		
행사국가		행사도시		
행사기간		행사일수	(일)	
행사매장		매 장 수	(점)	
행상품목	품목명			제조사
한국식품 수입 (매출)실적(USD)	(‘20)	(‘21)	(‘22)	
신청예산	(원화)	(USD)	목표수입액 (=사업의무액)	(원화) * 신청예산의 00배
행사중점 추진방향	-			
판촉 연계 수입계획	- 행상품목, 수입액, 수입(예정)날짜 작성			
자체 마케팅계획 (가점사항)	- 제출하는 판촉 내용 이외의 목표하는 판촉 행사기간 한국식품 홍보마케팅 계획 작성(기간, 홍보매장(플랫폼), 주요 행사내용 등 포함 필수 - 예시 : 12월 중순, 코스트코, 김치 데모행사			

* **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(원화)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, 해당 목표수입액은 사업의무액이 되어 최종 사업비 정산 시, 해당 목표수입액(사업의무액) 대비 실제 달성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정산되오니, 목표수입액을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**

* **선정 시 실제 배정예산은 신청예산보다 감액될 수 있으며, 예산이 줄어든 비율만큼 목표수입액도 감액됩니다.**

* **20~22 한국식품 수입(매출)실적은 사업자 선정 시 목표수입액 도전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반영됩니다.**

◎ 행사 유통매장 및 온라인 플랫폼 정보

유통매장1		총점포수	
주 소 (본점)			
홈페이지		매출액 (`22)	(USD)
한국식품 취급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취급품목 :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이사항 :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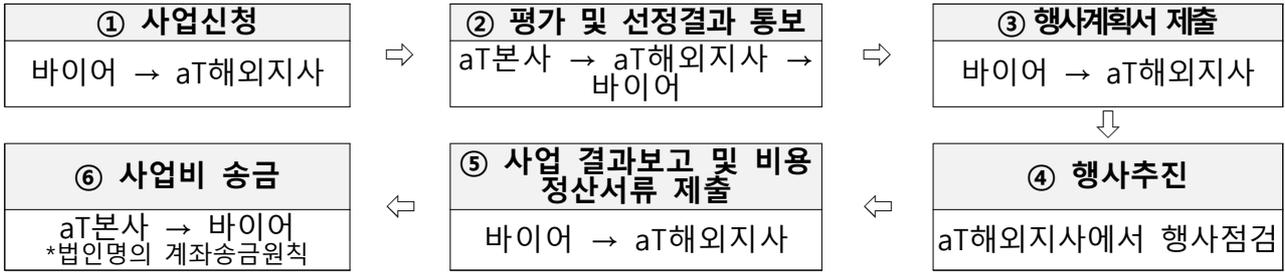
유통매장2		총점포수	
주 소 (본점)			
홈페이지		매출액 (`22)	(USD)
한국식품 취급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취급품목 :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이사항 :		

유통매장3		총점포수	
주 소 (본점)			
홈페이지		매출액 (`22)	(USD)
한국식품 취급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취급품목 :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이사항 :		

유통매장4		총점포수	
주 소 (본점)			
홈페이지		매출액 (`22)	(USD)
한국식품 취급현황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취급품목 :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이사항 :		

2023년 온·오프라인 해외판촉사업 안내

1. 사업추진 절차



2. 지원기준

1) 판촉형태

- 판촉은 반드시 현지 유통채널 내 행사품목이 입점되어 있어야 하며, 시식 또는 시음활동 필수
- 온라인 판촉 및 시식활동이 어려운 경우 유통매장 내 행사관련 홍보물이나 장치 필수 설치(현수막, 배너, 패널, 매대 설치 등)
- 오프라인 판촉의 경우 유통매장 판촉 없이 단순 제품설명회, 홈쇼핑 판촉, 카탈로그 제작 등 추진 불가
- 온라인 판촉시 해외 온라인·O2O 매장 및 플랫폼 활용(온라인시식, SNS 홍보 등)

< 예 시 > * 항목별 지원기준 해석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필요

① 제품소개나 레시피 콘텐츠 제작 배포, 유튜브, 페이스북 등 활용 미디어 홍보 및 이벤트 실시, 앤드캡, KIOSK 및 E-Pop 스크린, 무인 전용매대 설치, 시식체험을 위한 푸드트럭, 온라인 시식 등

② O2O매장 행사 관련 해당사이트 메인페이지, 슬라이딩, 배너광고 제작, SNS, 유튜브 내 쇼핑태그, 링크 등

* 온라인몰은 오프라인 매장과 직접 관련된 곳이거나 '유통매장 전용관' 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
(ex 중국 하마선생 유통매장 연계 하마선생앱 홍보 가능, 태국 TheMall 매장 연계 HappyFresh앱 내 TheMall 전용관 홍보 가능)

2) 사업의무액

- 사업 신청 시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간주하며 가공 품목은 신청예산의 최소 3배 이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해야 100% 정산 가능
ex) 신청예산 한화 5천만원일 시 수입의무액 최소 1.5억원(3배) 기재 및 달성 필요
- 판촉행사 품목의 수입의무액으로 행사기간 전 60일 및 행사기간 동안의 수입 실적으로 달성여부 판단, 미달성 시 달성 비율(%)에 따라 최종지원금 감액 지급

- 현지 공식 수입신고서 제출하되, 인보이스 제출시는 B/L첨부(수입증빙 제출이 어려울 경우, 협의 후 수출신고필증(이행완료) 제출)
- 중국지역 벤더(경소상) 연계 판촉의 경우, 납품받은 사업자(거래관계 수입상)의 수입대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 동시 제출 시 인정하며 거래관계수입상의 수입(대행)증빙은 판촉기간 전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
- 벤더일 경우 수입상과 거래관계증빙(계약서 등)과 수입상으로부터의 구매영수증(2배이상) 동시 제출시 인정

3. 기타

- 행사국가, 매장, 품목은 변경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 피한 경우 aT 해외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비는 '선지출, 후정산' 원칙으로 결과보고 시 정산증빙 서류 제출 필요
- * 지원항목별 필요 정산 증빙은 각 aT해외지사로 문의